

농협은행

준법감시인심의필: 2024-3536

심의일: 2024.06.25

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퇴직연금 정기예금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"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", 동 법 시행령, 동 법 시행규칙 및 "퇴직 연금감독규정", "예금거래기본약관", "거치식예금약관"을 적용합니다.

제1조의2 용어의 정의

-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1. "사용자"란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.
 - 2. "가입자"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.
 - 3. "퇴직연금사업자"란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
 - 4. "디폴트옵션제도"란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조제15호에 따른 "사전지정운용제도" 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 - 5. "적립금"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 법 시행령, 동 법 시행규칙 및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2조 예금의 종류

-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.
 - 1. 고정금리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만기 시까지 적용
 - 2. 디폴트옵션형

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1조의3에 따라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제도의 정기예금으로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만기 시까지 적용

제3조 취급대상

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5조 계약기간

- ① 고정금리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, 6개월, 1년, 18개월, 2년, 30개월, 3년 또는 5년으로 합니다.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② 디폴트옵션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합니다.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할수 없습니다.

제6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7조 중도해지이자

- ① 만기일 전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 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만기일 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 금리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 - 1.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(급여이전 포함)
 - 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2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 - 3.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
 - 가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
 - 나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
 - 다.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라. 수탁자의 사임
 - 4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



- 5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
- 6. 가입자 사망
- 7. 연금 지급
- 8.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,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(개인형IRP에 한함)
- 9.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 IRP에 한함)
- 10.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
- 11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(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) 및 제13조의6 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)의 사유로 인한 상품교체인 경우
- ③ 제2항의 특별중도해지금리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 단,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한 중도해지 이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 금리를 적용합니다.

경과기간	적용금리 ^{주)}
3개월 미만	3개월 만기 금리
3개월 ~ 6개월 미만	6개월 만기 금리
6개월 ~ 1년 미만	1년 만기 금리
1년 이상	경과기간별 금리

주)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

제8조 만기처리방법

-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
 - 1.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,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. 재예치 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 로 정하며, 재예치 금리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를 적용합니다. 다만, 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는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특약은 퇴직 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- 2. 상기 1.에도 불구,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예치 하지 않습니다.
 - 가. 예금주가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
 - 나. 「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의4」제3호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
-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,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 - 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
 - 2.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,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



제8조의2 재예치 기준일

이 예금의 만기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

제9조 분할해지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
 - 1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
 - 2. 퇴직급여의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 - 3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
- ③ 만기일전 분할 해지하는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합니다.

제10조 제한사항

이 예금은 통장발급,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예금자보호

-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,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-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은 2010년 12월 31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재예치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합니다.

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 제8조 재예치는 2011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.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은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 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.

<u>부 칙</u>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<u>부 칙</u>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

<u>부 칙</u>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2조 (경과규정) 제8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.

<u>부</u>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특약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

※ 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